#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6허8278 등록무효(특)

원 고 주식회사 에프에스코리아

피 고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변 론 종 결 2017. 6. 9.

판 결 선 고 2017. 7. 7.

# 주 문

-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6. 2015당451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3호증)

- 1) 발명의 명칭 : 화장품 용기
-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6. 5./ 2014. 2. 14./ 2014. 12. 3./ 제1471339호

3) 청구범위(2016. 8. 22. 정정청구된 것)1)

【청구항 1】화장품을 <u>내부에 수용한 용기 본체(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용기</u> 본체로부터 화장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출수단(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배출수 단에서 상기 화장품이 배출되는 <u>출구 측</u>에 구비되며, <u>복수의</u> 토출구를 구비하고 금속 재질로 이루어지며 사용자의 퍼프가 접촉할 수 있고 열을 외부로 발산할 수 있도록 외 부로 노출되는 토출판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 <u>상기 배출수단의 출구에 상기 토</u> 출판의 중심이 위치하고, 상기 토출판의 눌림에 의해 화장품을 배출하며, 상기 복수의 토출구는 상기 토출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직경이 커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 품 용기(이하 '구성요소 4')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출수단은, 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 품 용기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토출판은, SUS 300 계열의 금속 재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용기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토출판은, SUS 304 재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용기

<sup>1)</sup> 아래 밑줄 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정된 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2016. 8. 22. 자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이라 함은 정정 후의 그것을 말하고, 다만 위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들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이라고 한다.

【청구항 5】제3항에 있어서, 상기 토출판은, 301L, 304L, 304LN, 304N1, 304J 1, 305EG, 309S, 310S, 316, 316L, 316LN, 316Ti, 317L, 321, 347, 329J3L, 329LD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용기

【청구항 6】제2항에 있어서, 상기 토출판은, 두께가 0.1 내지 1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용기

【청구항 7】제2항에 있어서, 상기 토출판은, 두께가 0.2 내지 0.3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용기

【청구항 8】제2항에 있어서, 상기 토출판은, 철, 스테인리스, 구리, 아연, 주석,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상기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둘 이상을 조합한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용기

#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①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화장품 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펌프 방식으로 토출되는 화장품이 상방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 부재를 구비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화장품 용기에 관한 것이다.

종래 스펀지 등에 화장품을 함침시키고, 사용자가 퍼프로 스펀지를 누르게 되면 스펀지에 스며들어 있던 액체 화장품이 배출됨에 따라 퍼프에 공급되는 방식의 화장품 용기는, 사용자가 스펀지를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퍼프에 필요 이상의 화장품이 묻어나올 수 있으며, 화장품을 퍼프에 묻혀 얼굴 등의 피부에 접촉시켜 바르고다시 반복하여 퍼프를 화장품이 함침된 스펀지에 눌러서 접촉시키게 되는데, 이때 피부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세균 등으로 인해 화장품에 심각한 오염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보관장소의 열기가 화장품 용기에 침투함에 따라 사용 시 화장품의 열기에 의하여 후텁지근한 느낌을 주고, 화장품이 피부에 스며드는 효과도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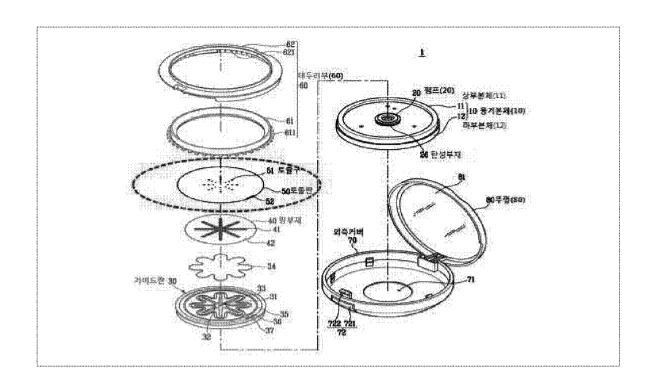
#### ② 기술적 과제 및 구성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액체 화장품이 펌프에 의해 배출되도록 하되, 배출되는 화장품이 상부로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의상부에 메쉬 형태의 망 부재를 구비하여 화장품 사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화장품용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방사상으로 배출로가 형성된 가이드판이 펌프의 상부에 구비되고, 가이드판의 상방에 복수 개의 토출구를 갖는 금속 재질의 토출판이 구비됨에 따라, 화장품이 가이드판의 배출로를 따라 흐른 뒤 토출구로 배출되도록 하여, 화장품이 고르게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 용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토출판을 스테인리스 금속 재질로 형성함으로써 항균성과 위생성을 확보하고, 금속 재질의 토출판이 화장품을 냉각시킬 수 있게 하여 화장품이 도포되는 사용자의 피부에 냉감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화장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출수단 및 배출수단에서 화장품이 배출되는 출구에 구비되며 복수의 토출구를 구비하고 금속 재질로 이루어지는 토출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③ 효 과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화장품 용기는 화장품이 메쉬 형태를 갖는 망 부재를 거쳐야만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여, 화장품의 튐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또한 펌프에서 배출된 화장품이 가이드판의 배출로를 따라 방사상으로 이동한 뒤에 망 부재를 거쳐 토출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직경이 커지는 토출구를 따라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여, 토출판의 상면에 고르게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하며, 토출판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토출판의 상면에 크롬 도금을 형성하여, 항균성과위생성 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속 재질의 토출판을 이용해 화장품을 냉각시킴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 나. 선행발명들2)

1) 선행발명 2(갑5호증, 을1호증의 1)

2013. 6. 20. 발매되어 2013. 7. 17.과 7. 22.에 각각 인터넷 뷰티 매거진 사이트인 "뷰티플(www.beautypl.co.kr)"에 게재된 "뮬 아이스 파운실러(샘물 쿠션)"라는 제품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과 주요 제품 사진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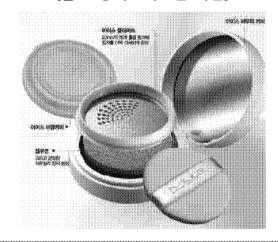
<sup>2)</sup> 원고는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정정 전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및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비교대상발명 1, 7, 8, 9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비교대상발명 1, 7, 9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그에 관한 주장도 하지 않은 채, 비교대상발명 8을 선행발명 1로 특정하여 제출함과 아울러, 새롭게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선행발명 2~5를 추가로 제출하였다가, 2017. 6. 9.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선행발명 1, 4에 관련된 주장을 모두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비교 대상발명 1, 7, 9 및 선행발명 1, 4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각 그 자세한 내용에 관한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한편, 실제 선행발명들 중 선행발명 2, 5는 각각인터넷 사이트의 게시글 속 포함된 제품 사진이고, 선행발명 3은 등록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이나, 이들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모두 '발명'이라고 부른다.

선행발명 2는 외부의 열기 차단을 돕는 3중 아이스 커버 용기를 채택해 제품의 쿨링감을 최대한 유지해주는 화장품 용기로서, 케이스를 돌리면 아이스 플레이트 위로 파운데이션이 나오는 구조이다.

선행발명 2는 아이스 버큠 커버를 열고 화장품 용기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화장품이 함침된 스폰지를 압축하고, 스폰지에 함침된 화장품이 복수의 홀이 형성된 금속 재질의 아이스 플레이트를 통해 배출되는 것인데, 아이스 플레이트에는 동일한 0.3mm 크기의 홀이 방사상으로 116개 형성되어 있다.

선행발명 2는 아이스 플레이트가 파운실러 내용물과 퍼프가 직접 닿는 것을 막아더운 여름철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을1호증의 1의 5면 하단]



[을1호증의 1의 7면 하단]



# 2) 선행발명 3(갑7호증)

2005. 5. 2. 등록되고 2005. 5. 10. 공고되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383969호에 실린 '액상 화장품 용기의 배출판'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과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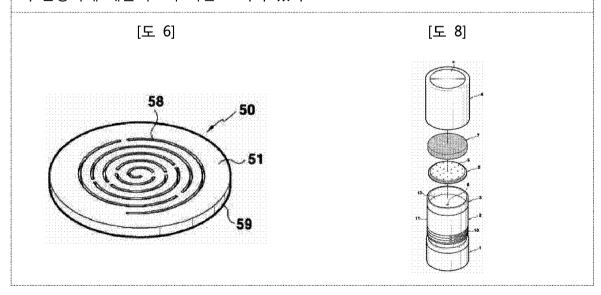
선행발명 3은 액상의 화장품을 배출하기 위해 저장부와 연통하는 배출부에 위치하여 액상 화장품을 넓게 배출해 주는 액상 화장품 용기의 배출판에 관한 것이다. 액상 화장품 케이스의 배출판은 그 형상에 따라 액상 화장품이 배축 효율이 높아

액상 화장품 케이스의 배출판은 그 형상에 따라 액상 화장품의 배출 효율이 높아 지는데, 종래의 배출판은 단순하게 원판 형태에 통공이 형성되어 있어 그 배출 효 율이 높지 않았고, 보조저장부(3)<sup>3)</sup>의 중앙에 토출공이 위치하므로 같은 높이로 제공되는 배출판은 실제적으로 토출공이 있는 중앙부의 상측으로만 배출판을 통하여 배출되고, 배출판의 주변부로는 액상 화장품이 잘 배출되지 않아 스폰지의 중앙부에만 액상 화장품이 스며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행발명 3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부와 연통되는 토출공이 형성된 보조저장부의 상면에 배출판이 위치하고, 원형 평판의 단부에 절곡부를 형성하며, 원형 평판에 다수 개의 통공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출판을 제공한다.

[도 6]에는 배출판의 또 다른 실시 예를 도시하고 있는데, 원형 평판(51)의 단부에 절곡부(59)를 형성하고, 원형 평판(51)에 다수 개의 호형 슬릿홀(58)을 형성한다. 호형 슬릿홀(58)은 중앙으로부터 테두리까지 여러 층의 원을 형성하여 이루어진다. 호형 슬릿홀(58)은 테두리로 갈수록 그 홀의 크기가 커지게 되므로, 토출되는 양이 주변부와 중앙부가 비슷하게 된다.

선행발명 3은 배출판의 형상을 개선하여 액상 화장품의 배출이 배출판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배출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3) 선행발명 5(갑9호증의 1, 2, 을2호증)

2013. 12. 20.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블로그에 소개된 게시글(A) 중 "

<sup>3)</sup> 괄호 안의 숫자는 선행발명 3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B"라는 제품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과 주요 제품 사진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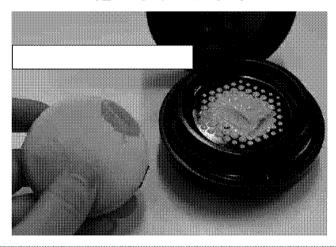
선행발명 5는 토출판과 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화장품 용기의 양 옆 부분을 눌러 주면 토출판의 토출구로부터 화장품이 배출되는 화장품 용기에 관한 것이다.

선행발명 5는 화장품을 내부에 수용한 용기본체와 누름 방식에 의해 용기 본체로 부터 화장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출수단,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지고 사용자의 퍼프가 접촉할 수 있도록 외부로 노출되는 토출판으로 구성된다. 토출판은 정육각 형의 벌집을 모티브로 한 90개의 일정한 크기의 토출구를 구비하고 배출수단의 출 구에 토출판의 중심이 위치한다. 토출판이 눌리면 가운데서부터 화장액이 배출된다.

[을2호증의 11면 상단]



[을2호증의 11면 상단]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 1) 원고는 2015. 9. 1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7에 의하여 각그 신규성을 결여한 것이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 1, 8, 9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5당4515 사건으로 심리하게 되

었는데, 피고는 위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6. 8. 2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정정 전 청구항 1을 위 가.의 3)항과 같이 정정 또는 추가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3) 그 후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와 정정청구를 함께 심리하여, 2016. 10. 6. 「피고의 위 2016. 8. 22.자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제1~3항의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은 그 우선권주장일 뒤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7에 의하여 신규성이부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8, 9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청구항 1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종속항인 청구항 2~8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정정청구를 인정함과 아울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에다가 선행발명 2,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1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2~8 역시 각 그 추가 한정 사항만으로는 새롭게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1) 선행발명 2에 의하여 냉감 및 오염 차단 효과가 있는 스테인리스 토출판이 공지되어 있는 이상, 선행발명 5의 플라스틱 배출판을 선행발명 2의 스테인리스 토출판

으로 치환할 합리적인 동기가 있고, 그 치환에 어떠한 기술적인 곤란성도 없다.

2) 선행발명 3은 토출판의 중심부보다 주변부에서 화장품이 적게 토출되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다가, 선행발명 3의 호형 슬릿홀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4 중 원형 토출구와 그 형상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양 구성요소 모두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홀의 크기가 커져서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배출되는 화장품의 양이 균일해지는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4와 같이 토출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토출구의 직경을 크게 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기술상식 내지 주지관용수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4는 선행발명 5에다가 선행발명 3을 결합하거나 기술상식 내지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3) 나아가 청구항 1의 화장품의 냉감 및 오염 차단 효과는 선행발명 2에, 화장품이 균일하게 배출되는 효과는 선행발명 3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청구항 1의 작용효과는 선행발명들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다.

#### 나. 피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이나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항 1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2~8 역시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으므로4,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sup>4)</sup> 한편, 피고는 2017. 5. 10.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8에 관하여 각그 추가 한정 사항만으로 청구항 1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뛰어넘어 새롭게 진보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점은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1) 청구항 1의 구성요소 4 중 복수의 토출구가 토출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직경이 커지는 부분은 선행발명들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선행발명 3의 호형 슬릿홀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길이가 길어지는 것일 뿐이지, 구성요소 4와 같이 토출구의직경 자체가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 또 선행발명 3은 화장품이 배출판의주변부에서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청구항 1은 배출판 전체에 분포되는 화장품의 뭉침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균등한 화장품의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청구항 1과 같은 정도의 화장품의 균일한 분포를 달성할 수 있는 토출 구의 구성에 대하여 전혀 제시 또는 시사하지 않고 있는 선행발명 3으로부터 청구항 1 의 구성요소 4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선행발명 5는 냉감 효과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플라스 틱을 가공하는 것이 금속에 비해 저렴하고 용이하다. 또한 선행발명 3의 호형 슬릿을 금속 재질의 토출판에 적용하기도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어서, 선행발명 5에다가 선행발명 2, 3을 결합할 동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항 1은 토출판의 눌림에 의해 화장품이 배출되는 구성인 데 반하여, 선행발명 5는 배출판의 테두리를 눌러 화장품을 배출시키는 방식이고, 선행발명 2, 3 역시 토출판을 가압하여 화장품을 배출시키는 청구항 1과 그 작동방식이 상이하므로, 이들을 결합하더라도 청구항 1의 토출판의 눌림에 의해 화장품을 배출하는 구성과 토출판 전체에 화장품을 균일하게 배출하는 구성의 도출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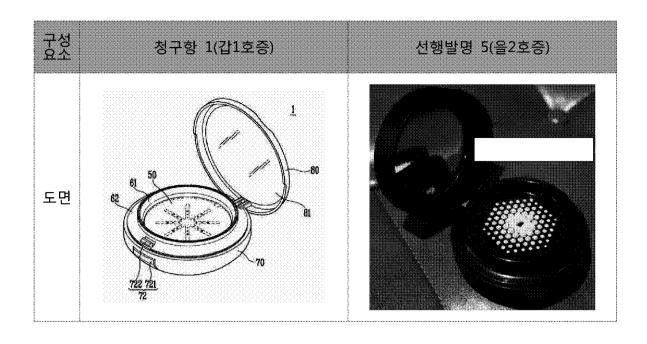
3) 청구항 1은 토출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토출구의 직경이 커지기 때문에 토 출판의 중심과 주변부에서 화장품의 균일 배출이라는 효과가 있고, 퍼프가 함침 스펀 지에 직접 접촉하는 대신, 토출판과 접촉함에 따라 화장품의 오염을 차단하고, 금속 재질로 된 토출판의 높은 열전도율에 의해 냉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청구항 1의 작용효과들은 선행발명들에 비하여 현저한 것이다.

### 3.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진보성 부정 여부

# 가. 선행발명 5와의 구성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구성 요소	청구항 1(갑1호증)	선행발명 5(을2호증)
1	화장품을 내부에 수용한 용기 본체	- 화장품을 내부에 수용한 용기 본체
2	용기 본체로부터 화장품을 외부로 배 출시키는 배출수단	- 누름방식에 의하여 용기 본체로부 터 화장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 출수단
3	배출수단에서 화장품이 배출되는 출 구 측에 구비되며, 복수의 토출구를 구비하고 금속 재질로 이루어지며 사 용자의 퍼프가 접촉할 수 있고 열을 외부로 발산할 수 있도록 외부로 노 출되는 토출판 포함	구를 구비하고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지며 사용자의 퍼프가 접촉
4	배출수단의 출구에 토출판의 중심이 위치하고, 토출판의 눌림에 의해 화장 품을 배출하며, 복수의 토출구는 토출 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직경이 커 지는 것	성되어 있는 화장품 용기의 양 옆
주요	[도 2]	[11면 상단의 사진]



#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 가) 구성요소 1, 2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5의 대응 구성은 모두 화장품을 내부에 수용한 용기 본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5의 대응 구성은 모두 용기 본체로부터 화장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출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 나) 구성요소 3 부분

한편, 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5의 대응 구성은 모두 배출수단의 출구 측에 구비되어 퍼프가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외부로 노출된 토출판인 점에서는 일치하나, 구성요소 3은 금속 재질의 토출판인 데 반하여, 선행발명 5의 대응 구성은 플라스틱 재질의 토출판이라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1**').

# 다) 구성요소 4 부분

청구항 1의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5의 대응 구성은 배출수단의 출구에 토출판의 중심이 위치하고 토출판에는 복수의 토출구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먼저 구성요소 4는 토출판의 눌림에 의하여 화장품이 토출구를 통해 배출되는데, 선행발명 5의 대응 구성은 토출판과 일체로 형성된 화장품 용기의 양 옆부분을 눌러 화장품을 배출한다는 점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5의 경우에도 화장품을 배출하기 위하여 누르는 화장품 용기의 양 옆 부분은 토출판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출판의 중심부를 누르는 경우에도 화장품이 토출구를 통해 배출될수 있는데다가, 구성요소 4 역시 토출판의 중심부 대신 테두리 부분을 가압하더라도 토출구를 통해 화장품이 배출될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구성요소 4의 복수의 토출구는 토출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직경이 커지는 구조인 데 반하여, 선행발명 5의 대응 구성은 복수의 토출구가 일정한 크기의 정육각형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

# 나.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 1) 차이점 1의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5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에다가 선행발명 2를 결합하 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가) 즉, 아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3호증)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3 에서 사용자의 퍼프가 접촉할 수 있고 외부로 노출되는 토출판을 금속 재질로 구성한 것은 사용자가 토출판의 상면에서 이루어지는 화장품의 냉각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 도록 하기 위합이다.

[0081] 본 실시 예는 금속 재질의 토출판(50)을 이용함에 따라 토출판(50)이 열을 효율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해, 화장품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0162]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 용기(1)는, 토출판(50)을 금속 재질로 구성함에 따라 토출판(50)의 상면에서 급격한 냉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이 토출될 때 화장품에 내포된 열이 외부로 방출되도록 함으로써, 쿨링감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나) 한편, 선행발명 2 역시 화장품의 냉감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한 구성으로 서, 금속 재질의 아이스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퍼프가 아이스 플레이트에 직 접 접촉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2의 아이스 플레이트는 구 성요소 3의 금속 재질의 토출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 그런데 선행발명 2, 5는 모두 휴대가 가능하고 액상의 화장품을 배출하는 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또 선행발명 5의 플라스틱 재질 토출판도 외부로 노출되어 사용자의 퍼프와 직접 접촉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이미 화장품의 냉감 유지를 통해 사용자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였고, 그 결과 선행발명 2와 같이 퍼프에 닿는 토출판을 금속 재질로 한제품이 출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장품의 냉감 효과를 위해 선행발명 5의 플라스틱 토출판을 선행발명 2의 금속 재질로 대체할 동기는 충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또한 금속 재질은 화장품 용기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재료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5 역시 토출판이 외부로 노출되어 퍼프에 직접

접촉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선행발명 2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냉감 효과를 위하여 선행발명 5의 토출판을 금속 재질로 치환하는 데에 특별히 선행발명 5의 특징적인 구성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등의 기술적인 어려움도 없어보인다.

### 2) 차이점 2의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5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에다가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먼저 구성요소 4 중 토출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토출구의 직경이 커지는 부분은 아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3호증)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화장품이 토출판의 상면에서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0090] 가이드판(30)의 배출로(32)는 방사상으로 형성되며, 망 부재(40)의 메쉬 부분(41)은 가이드판(30)의 배출로(32)를 포괄하는 형태를 가지는바, 토출구(51)는 배출로(32)와 마찬가지로 방사상으로 구비될 수 있다.

[0092] 이때 방사상으로 구비되는 토출구(51)는, 토출판(50)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직경이 커질 수 있다. 화장품은 펌프(20)에 의해 중앙에서 배출되어 가이드판(30)의 배출로(32)를 따라 흐르게 되므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화장품의 유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토출구(51)의 직경을 모두 동일하게한다면 토출판(50)의 상면에는 화장품이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토출구(51)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크게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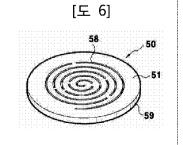
즉, 화장품은 배출 압력이나 토출구의 면적이 클수록 많은 양이 배출될 수 밖에 없는데, 배출수단의 출구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화장품의 배출 압력이 낮아지게 되므로, 토출구의 직경이 같은 경우라면 토출판 주변부보다 중앙부에 화장품이

더 많이 배출되고, 이로 인하여 토출판의 상면을 통해 배출되는 화장품이 균일하게 분 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주변부로 갈수록 토출구의 직경을 크게 하는 등으 로 화장품이 배출되는 토출구의 면적을 크게 함으로써 화장품이 중심부는 물론, 주변 부에서도 화장품이 균일하게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나) 한편. 선행발명 3은 그 명세서(갑7호증)에서 액상 화장품 용기의 배출판에 관하여 종래 액상 화장품 케이스의 배출판은 중앙에 토출공이 위치하여 화장품이 토출 공이 있는 중앙부의 상측으로만 배출되고, 배출판의 주변부로는 잘 배출되지 않아 스 폰지의 중앙부에만 액상 화장품이 스며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배출판의 형상을 개 선하였고, 그 결과 액상 화장품의 배출이 배출판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배출되도록 하 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다(3면 6~8행, 4면 아래에서 14, 15행 참조).

또한 선행발명 3은 그 명세서(갑7호증)에서 아래와 같이 그 실시 예의 하나 를 소개하고 있는데, 위 실시 예에서는 화장품의 토출공인 호형 슬릿홀의 크기를 주변 부로 갈수록 크게 형성하면 화장품이 토출되는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주변부로 갈수록 배출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화장품이 중앙부와 주변부에서 비슷하게 토출되어 화장품이 배출판에서 균일하게 배출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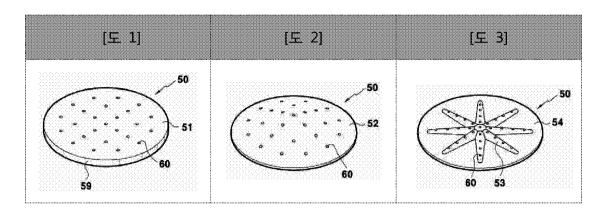
> [도 6]에는 본 고안의 배출판의 또 다른 실시 예를 도시하고 있는데, 원형 평 판(51)의 단부에 절곡부(59)를 형성하고, 원형 평판(5 1)에 다수 개의 호형 슬릿홀(58)을 형성한다. 호형 슬 릿홀(58)은 중앙으로부터 테두리까지 여러 층의 원을 형성하여 이루어진다. 호형 슬릿홀(58)은 테두리로 갈 수록 그 홀의 크기가 커지게 되므로 토출되는 양이 주변부와 중앙부가 비슷하게 된다(4면 5~8행).



즉, 선행발명 3의 위와 같은 실시 예는 토출공이 중앙에 위치하여 화장액이 중앙부의 상측으로만 배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데서 더 나아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4와 마찬가지로 배출판에 화장품을 보다 균일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배출판의 주변부로 갈수록 토출공의 면적을 크게 한 것으로서, 청구항 1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같고 그 해결수단 역시 동일한 기술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선행발명 3은 그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토출공의 형상을 원형 대신 호형의 슬릿홀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만 구성요소 4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 한편, 선행발명 5의 복수의 토출구 역시 기본적으로 화장액이 토출판에 균일하게 배출되어 토출판에 직접 접하는 퍼프에 화장액이 골고루 묻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정육각형의 동일한 크기의 토출구를 사용한 결과 토출판의 중심부에 가까운 토출구에서 더 많은 화장액이 배출되는 현상이 확인되므로(을2호증), 통상의 기술자라면 화장품을 보다 균일하게 배출시키기 위해 선행발명 5의 복수의 토출구를 선행발명 3과 같이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크기가 커지도록 하는 구성을 적용할 동기가충분하다.

나아가 선행발명 5의 토출구는 그 형상이 정육각형이고, 선행발명 3은 호형 슬릿홀이지만,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의 아래 [도 1], [도 2], [도 3]에 나타난 실시 예와 같이 토출구의 형상을 원형으로 하는 것은 액상 화장품 용기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호형 슬릿홀에 비해 원형 토출구가 보다 간단하게 가공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5에다가 선행발명 3을 결합함에 있어토출판의 주변부로 갈수록 토출구의 크기가 커지는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형상을 원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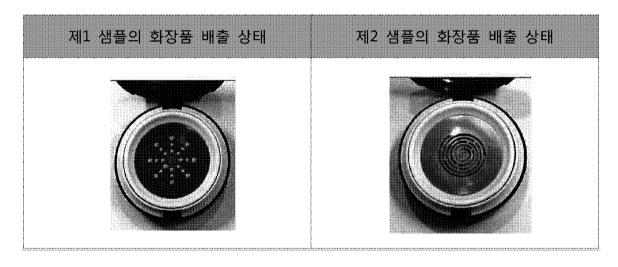
### 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플라스틱 재질의 토출판과 테두리 일체를 사출 성형으로 제작하는 선행발명 5의 토출판을 선행발명 2의 금속 재질로 치환하는 것은 제품 단가의 상승, 제조공정의 복잡화, 제조시간의 증대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선행발명 3의 호형 슬릿홀을 금속 재질의 토출판에 적용하는 것도 가공의 용이성및 내구성 등의 측면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행발명 5에다가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재질이 변경되면 제품 단가나 제조공정 등이 달라진다는 것은 통상의기술상식에 속하고, 재질의 변경에 따라 적절한 설계변경이 수반된다는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비록 제품 단가가 일부 상승되더라도 냉감 효과라는 추가적인 기능이 부가된다면 이는 선택의 문제이지 치환을 저해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선행발명 5에다가 선행발명 3을 적용함에 있어 금속 재질의 특성과 제작의 용이성등을 고려하여 호형 슬릿홀 대신 원형 토출구로 그 형상을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형상의 변경은 쉽게 착안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화장품 용기와 선행발명 3의 호형 슬

릿홀의 모형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배출판 대신 적용한 화장품 용기를 제1, 2 샘플로 제작한 다음, 각 샘플의 배출판 아래 가이드판에 배출로를 형성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에서 토출판을 가압하여 화장품의 배출 상태를 대비하였다면서 을3호증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아래 사진들과 같이 제1 샘플에서는 화장품이 배출판 전체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었지만, 제2 샘플에서는 배출판의 중심부에만 화장품이 집중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항 1은 선행발명 3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피고가 임의로 제작한 샘플에 의한 위와 같은 실험결과만으로 액상 화장품이 배출판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배출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선행발명 3의 명세서 기재를 무시하고, 선행발명 3에 실제 그와 같은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갑10~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시된 제품의 경우에도 토출판의 중심부에서 보다 많은 화장품이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배출판 아래쪽의 배출로에 화장품이 모두 채워지면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제2 샘플에 대한 위 실험 결과에서도 그 배출판 아래쪽의 가이드판에 액상 화장품이 채워지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

라서 위 제1, 2 샘플의 비교 결과만으로는 청구항 1이 선행발명 3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에다가 선행발명 2, 3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효과 역시 선행발명들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항 1은 선행발명 2, 3, 5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1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청구항 2~8의 경우 그 각 추가 한정 사항만으로는 새롭게 진보성이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청구는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이정석

판사 김부한

판사 이진희